

제276회 임시회  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성백진 의원 대표발의)

## 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성 백 진  
(더불어민주당, 보건복지위원회)

□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,
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백진 의원  
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5조에 따르면, 서울시복지재단은 각 회계연도의 ‘연간 사업계획서’ 및 ‘예산서’를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(제1항) 하고, ‘결산서류’의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(제2항)하여야 합니다.

하지만, 서울시에 제출하는 상기의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예산서’의 제출 시한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·심의의결 절차와 시기 등을 감안할 때 그 현실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.

또한 ‘결산서’의 제출기한의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 신고

기한이 매해 3월말 인 점과,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시한의 경우에도 ‘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’ 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, 현행 조례상 제출기한은 실무적 이행과 관련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.

따라서, 본 개정안은 이상과 같은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복지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